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31	l./(총 23	3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김 우 람		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팀 장	김 성 훈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법무부	과 장	구 본 준		02-2110-4035
출입국심사과	담 당 자	류 재 석		02-2110-404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정 순 길	전 화	044-202-1770
방역지원팀	담 당 자	정 세 민		044-202-1768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조 현 숙		044-202-1723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신 현 두 문 달 해 민 유 정		044-202-1890 044-202-1883 044-202-1888
국토교통부	과 장	이 창 희		044-201-3970
철도운영과	담 당 자	고 성 우		044-201-4636

-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임시생활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이제라도 논의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확보를 자기 일로 여기면서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아직 해외에 계신 1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 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 근로자들의 현황과 방역수요를 조속히 파악 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최근 언택트 휴가지로 인기인 캠핑장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느 휴가지에도 방역 안전지대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휴가철의 정점인 8월 초를 맞아 관내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최근 결혼·장례식장 등에 방역관리가 느슨해진다고 지적하면서, 음식 접대 간소화나 행사장 내 접촉을 줄이는 방안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1 제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그간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 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1차: 6.23., 2차: 7.6.)한 이후 이들 국가로 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 1차 지정(6.23., 2개국)
 - : (6.28.-7.4.) 108명 → (7.5.-11.) 68명 → (7.12.-18.) 67명 → (7.19.-25.) 67명 2차 지정(7.6., 2개국)
 - : (7.5.-11.) 230명 → (7.12.-18.) 71명 → (7.19.-25.) 59명
- 다만,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 □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할 계획이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 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 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 □ 아울러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 조사하여,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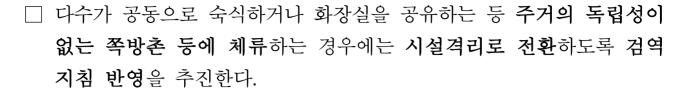












- □ 이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 * 현재는 연락처(보호자)라고 되어 있어 단순 지인의 연락처 기재 가능
- □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또한,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신고) 제1항 위반 :
 (현행) 100만 원 이하의 범칙금 → (개선) 200만 원 이하의 범칙금











2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지	건복지	시부 경	중앙사	고수습본부 (본부	^니 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격리·치료시설 '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구 .		

- □ 그간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2개의 격리·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약 3만 6,000여 명을 격리·치료하였다.
 - ※ (시설 수 기준) 인천 중구(6개소), 천안시(5개소), 제천시(4개소) 순(인원 수 기준) 인천 중구(1만 7,631명), 김포시(6,450명), 천안시(1,968명) 순
- □ 정부는 그간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 및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유인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였다.
 -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업 평가*시 관련 실적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포상 및 공모사업 공모 시 가점 등을 부여하고,
 - 보건복지부 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관련 실적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사전 조정할 계획이다.
 - * 지역복지사업 평가(복지사업 전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건강 증진사업 전반),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지역의료사업 전반)
 - ** (사례) 육아지원종합센터 설치,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등
 - 또한, **각 부처에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인책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우선 지원 협조하기로 하였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그간 협조 해준 각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3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 □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에 편성된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등)에 방역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생활방역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 **방역 인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안내하고, 방역이 취약한 시설을 관리하는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 발열 체크, 소독, 청소, 방역물품 전달, 방역수칙 준수지도 등
 -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보건 복지부 등)에서 추진하며, 총 9만 3천명의 일자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복지, 문화체육,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8만 2천명이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 부처에서는 관광지 및 공연장 방역 점검(문화체육관광부), 의료기관 방역 지원(보건복지부) 등에 1만 1천명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 생활방역 일자리 세부 현황 >

(단위:명)

분야	주요시설	참여인원
사회복지	노인・사회복지관, 노숙인 아동・여성, 장애인 등	18,954
문화체육	도서관, 체육시설, 박물관	7,099
학교 등	학교, 어린이집	24,885
휴가, 관광	해수욕장 등 생활방역	6,270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의료원, 선별진료소 등	6,096
공공시설	청사, 주민센터 등	8,897
그 외 기타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역사,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 등	20,798
	92,999	

* 사업계획서 기준이며, 추후 계획 변경 등으로 변동 가능











< 지자체 및 부처 일자리 운영 >

(단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16,046	8,509	8,501	5,996	2,335	3,019	1,278	541	20,536	79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문체부	복지부	_
2,899	1,037	853	1,984	4,000	2,555	842	5,988	5,288	_

○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방역 일자리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사례 >

- ▶ (서울) 다중이용 문화시설 생활방역사, 우리동네 생활방역 청년단(취약계층 방역지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생활방역 등
- ▶ (부산) 관내 학교 생활방역, 지하철 역사 내 생활방역, 전통시장 생활방역 등
- ▶ (대구) 대중교통 안심 방역·홍보단, 전통시장·소상공인 활력 방역기동단, 어린이집·학교 클린 방역단, 복지시설 사각해소 보듬 방역단 운영 등
- ▶ (**인천) 청소년수련관** 생활방역, **어린이과학관** 감염관리 보조 인력 등
- ▶ (광주) 학교방역보건지킴이, 대중교통 방역 지원, 동네방네 생활방역(다중이용시설 등)
- ▶ (대전) 코로나19 대응 생활기동대(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시내버스 방역단 등
- ▶ (**울산) 대중교통** 방역사업, **어린이집** 생활방역 지원 등
- ▶ (경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관리. **학교** 방역 등
- ▶ (충북)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방역. 전통시장 방역 지원 등
- ▶ (경북) 노인복지시설 생활방역단, 관광현장 클린안심 방역단 운영 등
- ▶ (경남)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업무지원, 자가격리 도우미 운영 등
- ▶ (충남, 제주) 피서철을 맞이하여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 발열 체크 및 감염 예방수칙 홍보 등
- ▶ (문체부) 공연장 방역 안전 지킴이(500석 미만 민간공연장). 관광지 방역 요원 배치
- ▶ (복지부) 의료기관(병원급, 보건기관) 환자 분류, 발열 체크 등 방역 인력 지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어디에서든 안심할 수 있도록 수요가 필요한 시설에 **일자리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촘촘한 생활방역**을 수행할 것이며,
 - 이번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 인력의 피로도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 개산급(概算給) 지급 및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손실보상 시작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7.29.)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 * (지급경과) (1차, 4.9.) 1,020억 원, (2차, 5.29.) 1,308억 원, (3차 6.29.) 622억 원
 -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4,023억 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57%를 집행**했다.
 -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93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624억 원**이 지급되었다.
- □ 이번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3억 원**이다.
 - 이번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개소에 239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 * 보건소 등을 제외한 손실보상 대상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2개소 중(7.22일 기준) 진료비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197개소에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97개소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유형으로 보상)
- **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대여 비용, 냉·난방기 설치비용,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은 3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별도 지원 중

< 코로나 19 손실보상 4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수, 억원) >

			선별진료소				
구분	총계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입원치료	기타 치료의료	운영병원
기관수	202	102*	51	20	61	5	100
지급액	1,073	834*	402	274	663	11	239

- * 각 유형별 중복 제외
-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3월 말 분까지)이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 병상 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 □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한다.
 - * (손실보상 대상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위해 전담팀 또는 인력을 배정하고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신청 안내 및 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
 -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 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일반영업장의 경우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례화 (매월)하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 현재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지방거주자의 이동을 위해 **KTX에** 입국자 전용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다만, 추석연휴 기간에는 일반국민의 철도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전용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전용칸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운행노선과 횟수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TX 산천은 현행과 같이 전용칸을 1량으로 유지하되, KTX-1은 전용칸을 1편당 2량 에서 1량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며,
 - 특정시간 및 노선에 **입국자가 몰리는 경우 입석과 광명역 대기**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KTX 입국자 전용칸 조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에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6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30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891개소, ▲해수욕장 105개소 등 39개 분야 총 1만 1,16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9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서울에서는 실내체육시설 90개소 등 1,373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4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부산에서는 해수욕장 96개소 등 564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흡 등 9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4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8개반, 57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3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814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3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242명 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606명, 국내 발생 자가 격리자는 3,63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45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30.)는 무탈이탈이 확인된 사람이 없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4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8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7월 30일) 입소 148명, 병원·퇴소 163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0명











- < 붙임 > 1.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사례
 - 2.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1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사례

서울특별시

- 【 사례 1 】 공연장 등 다중이용 문화시설 내 생활방역사 운영을 통한 문화활동 지원
 - 발열 증상 여부 확인, 주기적 실내환기, 시설 소독 및 방역 지원 등 * (참여대상/인원) 코로나19 피해 문화·예술계 종사자 등 117명
- 【 사례 2 】 '코로나19 인터넷 방역단' 운영을 통한 코로나 확진자 사생활 침해 예방(송파구)
- 확진자 동선 정보 인터넷 검색 및 신고접수를 통한 삭제요청 등 < 업무추진절차 >



부산광역시

【 사례 1 】 부산시 관내 학교 생활방역

-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내 학교 생활방역 사업을 발굴· 반영하여, 대면수업 실시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안전한 수업이 가능토록 하며, 모범사례임.
 - * 학생보호를 위한 방역소독, 발열체크 등 생활방역업무 지원(3,051명)

【 사례 2 】도시철역사 내 생활방역지원

-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시철도 역사 내 생활방역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 * 마스크 착용 점검, 독려 및 안전사고 방지 업무보조 등(428명)











대구광역시

【 사례 1 】대중교통 안심 생활방역·홍보단

- 도시철도 역사 내 방역 및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소독, 역사 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계도 및 홍보(91개 역사, 790명)
- 버스·택시 승강장(587개소), 버스 회차지·차고지(27개소), 터미널, 택시 쉼터 등 안심방역(481명)

【 사례 2 】 전통시장·소상공인 활력 방역기동단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위생업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경제회복 활력 방역(22,178개소, 868명)

【사례 3】어린이집·학교 클린 방역단

-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출입자 발열 체크, 화장실·급식실· 복도 소독 등 클린 방역(1,113개소, 2,812명)

【 사례 4 】복지시설 사각해소 보듬 방역단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자 발열 체크, 소독 등 보듬 방역단 운영(959명)

[생활방역 우수사례 : 대구광역시]



코로나19 극복 생활방역단 발대식 (방역교육, '20.4월)

- ◆ 코로나19극복 생활방역단 운영
- 기 간: '20. 4.~7월
- 참 여: 960명(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 8개 구·군별 생활방역단 구성, 운영
- 사업비: 42억원(국비,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 배치장소: 234개 읍면동
- 내 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장 중점 방역 실시를 통해 방역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경감











인천광역시

【 사례 1 】청소년수련관 생활방역 지원

-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민 체온측정 및 시설 방역 수행, 수련관 수목 정비 및 환경개선 등

【사례 2】 인천 어린이과학관 감염관리 보조 인력

- 주말에도 근무하며 인천어린이과학관 방문객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활동 (방문일지 작성, 발열 체크, 관람 안내 등)

광주광역시

【 사례 1 】대중교통 방역 지원

- 대중교통시설의 공영차고지 방역과 버스차량 1회 운행 후 1회 소독·방역 활동 인력 지원 (11개 차고지, 82개 노선, 999대 버스차량 방역, 180명 인력 지원)

【 사례 2 】 학교 방역

- 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현장 방역 지원 * 국·공·사립 유·초·중·고 484개교 대상, 방역 인력 825명 지원

대전광역시

【 사례 1 】 대전시 코로나19 대응 생활기동대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공공장소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형 공공일자리 제공
 - * 승강장, 어린이놀이터, 시장, 요식업소, 고위험시설 12종 등 방역 지원 등(5개구 79개동 1,920명)











【 사례 2 】희망 일자리 연계, 시청사 출입통제 인력 확충

- 효율적인 청사 출입자 관리 및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열화상 근무자 운영
 - * 시 청사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링 및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안내

【 사례 3 】 대전시 코로나19 대응 시내버스 방역단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방역업체의 경제고 해결
 - * 18개 기점지에 방역원 1일 90명 배치 / 75일간 시내버스 985대를 매일 6회 이상 방역

[공공기관 생활방역 우수사례 : 대전복지재단]

- ◆ 대전시 코로나19 대응 교통약자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방역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자활근로, 자활기업)와 연계하여 이용자 불안감 해소와 저소득주민의 일자리를 연계, 방역비용 절감 (특별교통수단(특장차) 86대, 전용임차택시 90대 등 주3회 방역실시)
- ◆ 대전시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극복, 우리함께 해유~ 직원 생활 방역단 운영** : 같은 건물에 입주한 기관의 직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직원 생활방역단**을 조직하여 외부의 방문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일상의 생활방역 활동 실천



공동 연합방역실시와 기관별 개별 방역을 병행하여 방역비용을 절감(방역기기 공동 사용 등)

* 참여기관: 대전복지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직원 참여

울산광역시

【 사례 1 】대중교통(시내버스) 방역사업

- 시내버스 1운행 1소독 지원, 차고지·회차지 방역,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홍보 및 계도(90명)











【 사례 2 】 어린이집 생활방역 지원 사업

- 어린이집 교구교재 등 물품 소독 및 실내 환기, 어린이집 내·외부 방역활동 지원(526명)

세종특별자치시

【 사례 】 학교 방역 지원

- 관내 학교(유치원 포함 53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발열체크, 화장실· 급식실·복도 소독 등 학교방역 인력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지원

경기도

【 사례 1 】 경기도 관내 다중이용 출입자명부 관리

- "OR코드"를 활용하여 출입자명부 확인 지원 등

【 사례 2 】 경기도 관내 학교 방역 작업 실시

- 관내 학교 대상으로 출입자 발열 체크, 시설 소독, 생활방역 준수 안내 등

강원도

【 사례 1 】속초시 택시운수종사자 및 승객 발열체크 및 방역·소독

- 버스(택시) 승강장 기사 발열체크 및 택시 소독, 증상여부 확인, 거리두기 안내 등

【 사례 2 】속초시 버스터미널 열화상 카메라 운영

- 버스터미널 청사 내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영 및 손 소독 안내 등











충청북도

【 사례 1 】 충북 옥천군 내 기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방역

- 외국 입국자 및 단체 생활로 인해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방역단 운영(실내 환기, 소독 등 방역 지원 및 안전수칙 안내)

【 사례 2 】 충북 충주시 전통시장 방역

- 주 이용 연령층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에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안내 등 지원

충청남도

【 사례 】 충남 태안군 해수욕장 발열 체크 및 자율방역

- 해수욕장 진출입로에「Drive-thru」설치, 발열 체크·손목밴드 착용·방역
 - * 관내 28개 해수욕장 166명 배치

전라북도

【 사례 1 】 전주시 안전하고 정돈된 전주한옥마을 선도단 운영

- 전주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에 유동인구 밀집에 대비한 선도단 운영
 - * 30명 배치, 질서유지 캠페인 활동, 생활방역 실시

【 사례 2 】전주시 자연생태관 재개관 지원 일자리

- 운영 중단중인 공공 체험·문화시설 재개관을 위한 방역 활동, 발열 체크, 간격 유지 안내 지원 등

【 사례 3 】지자체 내 코로나19 시설 운영점검 (검토중)

- 지속적인 방역점검단 운영을 통한 도민의 생활보조와 관내 공무원 업무 가중완화(방역의무시설 조치상황 점검(대장작성 등), 주의사항 안내 등)











전라남도

【 사례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 감염병 예방 생활방역지원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 재가시설 126, 기타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 대상 이용자 발열 체크 방역 수행 (5개 시군, 104명 배치)

경상북도

【 사례 1 】노인복지시설 생활방역단 운영

- 경로당, 요양시설 등 순회 방역 실시,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대상 이용자 출입 발열체크 증상여부 확인, 거리두기, 실내 환기 및 소독 등 지원(읍면동별 5~6명 구성)

【 사례 2 】 관광현장 클린안심 방역단 운영

-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 관광객 발열 체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안내 등 방역 지원(673명)

경상남도

【 사례 1 】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업무 지원

-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에 인력을 배치하여 방문자 발열 체크, 방문기록 정리, 생활 속 거리 두기 지도 등 지원

【 사례 2 】코로나19 자가격리 도우미 배치

- 자가격리자의 민원 발생 시 즉시 처리보조, 사무처리 지원, 코로나 관련 재난업무 보조를 통하여 코로나 관련 업무의 신속성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 사례 1 】 제주시 해수욕장 야영장 생활방역 지원

- 여름철 피서객 증가를 대비하여 안전한 피서활동을 위해 코로나19 예방활동 (방문객 발열 체크 및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안내 등)

【 사례 2 】서귀포시 어린이집 생활방역 지원

- 서귀포시 어린이집(21개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 업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사례 1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 전국 17개 시도 주요 관광지 1,070개소*에 관광지 방역요원 배치, 관광지 방역,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객 동선 관리 등 수행 * 지자체 방역대상지, 배치 인원 수요조사 진행 중(~7.28.)
- 【 사례 2 】 공연장 방역 안전지킴이 지원
- 전국 500석 미만 민간공연장 537개소에 '공연장 방역 안전지킴이 (공연장 방역 전담요원)' 배치(해당 공연장 당 1명, 총 537명)
 - * 문진표 및 개인연락처 작성, 손소독 실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매 공연 전 점검, 공연 중 마스크 착용 유지 여부 등 지속 점검

보건복지부

【 사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 의료기관에 방역 인력 지원하여 환자 분류, 발열 체크, 환자 안내, 방역 지원 등 수행
 - * 병원급 의료기관 4,038개소, 보건기관 295개소 등











붙임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